

지역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활성화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 전략이 공식 채택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성 주류화 전략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등 성 주류화 제도를 실시하여 정책과 예산에 젠더관점을 통합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이를 보다공고히 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로,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 전략 또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 제주, 대전, 대구,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 주류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이나 인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으며, 지역의 성 주류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변화가 눈에 띄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지역은 이전의 기조와 유사하거나 '저출산' 또는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여성·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간 성평등 수준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 운영을 위한 성 주류화 추진 기반에 대 해 살펴보고, 지역에서 성 주류화 관련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지 제언하고자 한다.

2. 지역의 성 주류화 제도운영 및 추진기반 현황

가. 지역의 성 주류화 관련 제도 추진 현황

성 주류화 전략 중 정책과 예산의 젠더관점 통합을 위해 추진 중인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지역의 성 주류화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19년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광역,



[그림 1] 2019년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기초의 구분 없이 계획이나 사업보다는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는 대상과제별로 평가대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데. 법령의 경우 지자체에서 제·개정하는 자치법규 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 획과 사업은 각 기관별로 성별영향평가 기준에 부합 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1).

2019년 광역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3,024개) 중 법령은 58.7%(1,776개), 사업은 40.5% (1,225개)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3,709개 대상과제 중 법령은 73.7%(17,485개), 사업은 26.0% (6,165개)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23개, 기초자치단체는 59개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전문가 컨설팅 및 검토를 거쳐 개선의견을 도출한후 검토의견 통보 시에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의 개선의견 수용률은 광역이 83.7% 기초가

⟨표 1⟩ 2019년 지방자치단체 별영향평가 대상과제별 추진 현황

구분 (대상기관수)		대상과제 수 ^{a)}		개선사항 없음 ^{b)}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d)}		개선의견 수용률 ^{e)}		기타 ^{f)}	
광역 자치 단체 (17)	계	3,024	(100.0)	1,173	(38.8)	898	(29.7)	441	(14.6)	369	(83.7)	512	(16.9)
	법령	1,776	(100.0)	1,018	(57.3)	65	(3.7)	185	(10.4)	144	(77.8)	508	(28.6)
	계획	23	(100.0)	8	(34.8)	7	(30.4)	6	(26.1)	4	(66.7)	2	(8.7)
	사업	1,225	(100.0)	147	(12.0)	826	(67.4)	250	(20.4)	221	(88.4)	2	(0.2)
기초 자치 단체 (226)	계	23,709	(100.0)	10,647	(44.9)	4,362	(18.4)	2,532	(10.7)	2,154	(85.1)	6,168	(26.0)
	법령	17,485	(100.0)	9,306	(53.2)	521	(3.0)	1,529	(8.7)	1,208	(79.0)	6,129	(35.1)
	계획	59	(100.0)	17	(28.8)	17	(28.8)	17	(28.8)	17	(100.0)	8	(13 <u>.</u> 6)
	사업	6,165	(100.0)	1,324	(21.5)	3,824	(62.0)	986	(16.0)	929	(94.2)	31	(0.5)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36쪽.

- 주 1 : a)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에 등록된 과제수(작성 제외 및 중단 과제 포함)
 - 2 : b) 여성 (폭취중앙)나 성별영향명 (책임관(지지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명) 사에 성치별이 발견되지 않아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 3:c)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획 원안에 동의한 과제
 - 4:d) 여성가족부(중앙)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지자체)이 검토의견 통보 시, 별도로 정책개선의견을 제시한 과제
 - 5 : e)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의 '수용' 및 '일부수용' 과제(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과제 수/개선의견 과제 수×100)
 - 6 : f)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 통보되거나 법령이나 정책이 중단된 과제
 - 7 : '-'는 해당 없음 의미

¹⁾ 성별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1) 법령의 경우 제·개정하는 자치 법규 (조례·규칙)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4조), 2) 계획의 경우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을 대상으로 하되,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할 경우' 체크리스트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외에는 기관별로 평가대상 계획을 선정하고 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동법 시행령 제4조), 3)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목표와 지역성평등지수 향상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신규·공약 사업, 일자리·4차 산업혁명·청년지원·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되, 계획과 같이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41쪽.

[그림 2]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분야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18, 2019)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42쪽.

[그림 3]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분야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2018, 2019)

85.1%로 나타나 정책개선의견 수용률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검토의 견 통보 시에 성별영향평가서에 작성한 자체개선계 획 원안에 동의한 '자체개선안 동의'과제의 경우 법 령보다는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즉 자치단 체에서는 법령보다는 사업의 개선을 위한 검토가 보 다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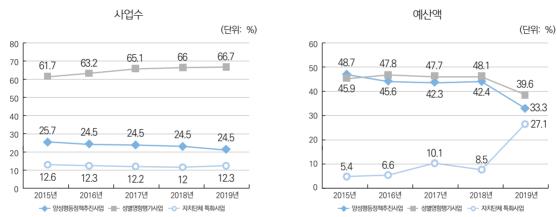
2019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정부기능분류 체계(BRM)의 대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사회복지(18.6%), 일반공공행정(14.2%), 공공질서 및 안전(11.6%), 문화체육관광(11.2%) 분 야, 기초자치단체는 사회복지(22.3%), 문화체육관 광(12.5%), 일반공공행정(11.3%), 교육(9.5%), 공 공질서 및 안전(8.9%)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였다. 매년 사회복지분야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비중 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상과제 선정 기준 의 변화로 일반공공행정이나 문화체육관광, 공공질 서 및 안전 등의 분야에 속한 과제도 10%내외로 평 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사업의 분야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 중 공통주제에 따 라서 변화하기에, 향후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평가 할 수 있도록 주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작성 현황을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를 통해

살펴보면,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수는 총 17,808개, 편성된 예산액은 약 24.3조원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 전체 지방예산 대비 성인지예산의 비중은 9.6%로 전년도의 9.0%대비 0.6%p상승하였고, 대상사업별로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이사업수(66.7%)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액(39.6%)에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33.3%)과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기능별로는사회복지분야가 사업 수(35.4%)와 예산액(71.5%)모두 가장 높고 일반공공행정(13.4%), 농림해양수산(11.0%), 문화 및 관광분야(10.1%)의 순으로 분

석되었다.

성인지예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성평등수준 등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지자체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수 및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성인지예산제도가 지역의 성평등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성평등 지수 등을 통해 성평등수준이 낮은 영역을 파악하고 해당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발굴되고 성과관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박수범 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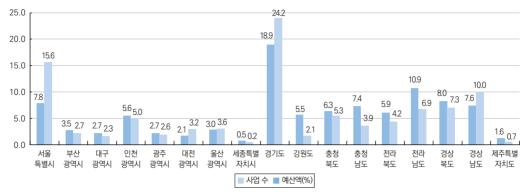
출처: 박수범 외(2019), 「2019년 지방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6쪽.

[그림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별 작성 결과(2015~2019년도)



출처: 박수범 외(2019), 「2019년 지방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7쪽.

[그림 5]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별 작성 결과(2015~2019년도)



출처: 박수범 외(2019), 「2019년 지방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35쪽.

[그림 6]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별 작성 결과(2015~2019년도)

나.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추진기반

각 자치단체의 성 주류화 관련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양성평등(성평등) 기본조례와 함 께 성별영향평가 조례, 성인지예산 조례 등이 제정, 운영되고 있다. 양성평등(성평등) 기본조례나 성별 영향평가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등이 법률로 제정된 반면,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별도의 근거법을 제정하지 는 않았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치법규로 성인지예산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2). 각 자치단체들은 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법·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조례 등의 입법화 과 정에 지방의회 여성의원들과 지역 여성단체가 연계 하여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3). 무엇보다 지역의 성평등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젠더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조직·인사·예산

민선 7기 자치단체 출범 후 제주, 대전 등 광역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성 주류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성 주류화 추진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이밖에 대구 및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담당관 형태의 참모형 조직을 국장급의 계선기관형 독립부서 형태로 변경하여 위상을 제고하기도 하였다. 장윤선·김경희·박수범·김수지·정혜선(2019)의 연구에서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추진부서의 인력은 20~30명 내외로 구성되며 그 중 성평등정책 주관부서의 사업 예산은 기관의 전체 예산 중 1%미만으로 책정된 것

²⁾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조례는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2017.12.15. 제정)"를 최초로, 2020년 12월 현재,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광주광역시 동구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 조례(2018.11.27. 제정)"가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이외에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성인지예산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ld=38subMenuld=27&tabMenuld=139#RJRX).

³⁾ 여성신문, "광주, 전국 최초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2017.11.29.)

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정부에서는 성평등정책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성평등 사업이 균형있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밖에 자치단체 성평등 제고를 위한 추진기구로 정부의 추진체계 외에 양성평등위원회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을 강화하고 성 주류화 이행점검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여성 대표성

지역의 정책형성과정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공무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성별 현황과 관련하여 먼저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7회지방선거의 당선인 통계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은 모두 남성이 당선되었고 기초자치단체장은 226명중 8명(3.5%)이 여성 단체장으로 당선되었다. 지방의회의 경우 각 지역별로 편차는 있으나 전체 광역의회 의원중 19.4%가 여성이 당선되었고, 기초의회 의원중 30.8%가 여성의원이다4).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5급 이상 관리직의 역할이 중요한데, 2019년말을 기준 으로 지자체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39.3%이나 고위공무원은 1명, 5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 공무원 비중은 17.8%로 전체 여성공무원 비중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양 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당연직 제외)의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2019년 말을 기 준으로 광역지자체의 경우 전체 위원회 중 84.6% (전년 대비 2.6%p 상승)가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위원회는 64.8%(전년 대비 4.6%p 상승)가 여성위원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 평균을 살펴보면 광역이 44.9%, 기초가 40.8%로 나타났다.

3) 지역의 여성 연구기관 현황

2020년 6월, 경상남도여성기족재단이 설립되면서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 등 14개 지역에서 여성·가족 및 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있으며, 이 중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을 제외하고는모두 각 지자체의 출자·출현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과 세종, 전북 지역의 경우 별도로 여성 연구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지방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과 전북연구원)에서 여성·가족 및 성평등정책 관련 연구 부서를 구성하고 있다.

장윤선·김경희·박수범·김수지·정혜선(2019)의 연구에서 공무원 및 전문가들은 지역의 성평등정책 에 대한 기대나 관심 정도가 여성·가족 및 성평등정 책 연구기관의 위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특히 지역의 여성정책 연구기관들에게 젠더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행정과 시민사회의 매개체 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과 시민사회 각각에 교육과 정보제공,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며, 동시에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연구물을 생산함으로써 지역에 성평 등 가치를 확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⁵⁾ 행정안전부(2019),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⁶⁾ 여성가족부(2020.7.29.), '2019년 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조사결과' 보도자료.

다. 여성단체 현황 및 지역 여성단체와 주민참여, 젠더거버넌스의 활성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 또는 여성NGO 현황 과 관련하여 김복태·박성정·장윤선·하현상(2018)의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비영리민간단 체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에는 중앙부처 등록단체가 65개, 광역자치 단체 등록단체는 244개, 기초자치단체 등록단체는 370개로 조사되었다. 2014년에는 중앙부처는 64 개. 광역자치단체는 192개. 기초자치단체는 370개 로 산정하였으며, 2017년에는 중앙부처는 68개, 광 역자치단체는 333개. 기초자치단체는 430개로 조 사되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자치단체의 여성 NGO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밖에 장윤선·김경희·박수범·김수지·정혜선(2019)의 연 구에서는 각 시·도의 여성·가족정책 담당부서에 등 록된 민간단체 현황을 행정안전부의 2019년 1/4분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총 1,184개로 집계되었으나 그 중 일부 단체의 활동기들 이 제더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복태·박성정·장윤선·하현상(2018)에서는 자치 단체에 등록된 NGO 외에도 지역 여성들의 작은 소 모임들을 활성화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의 여성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의 풀뿌리 단체나 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시 민모니터링단 등 지역정책에 참여하는 다양한 여성 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마다 다양한 젠더거버넌 스가 운영되고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맺음말: 지역의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지역의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운영과 추진기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 주류화의 목적은 정제된 제도의 운영만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한 정책의 실현에 있다. 최근 지역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성별영향평가기관을 각 시·도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는 정책과 예산에 젠더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의 전략 중 하나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 공무원, 젠더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시민 등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성 주류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 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며, 자치단체에서 성 주류화가 확고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여성 들의 풀뿌리 조직과 함께 공무원, 의회가 참여하는 젠더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젠더거버넌스 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시스템 안에 상 시적 기구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 치단체의 성 주류화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성 주류 화 주관하는 부서의 조직구조와 인사 운영을 어떻게 설계할 지는 각 자치단체의 특성과 기관장의 의지, 기관 내외부의 요구, 정책 환경 등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성 주류화 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조 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성 주류화 주관부서의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의 권한과 위상을 제고하고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 부서간 협조체계의 구축이 중요한데, 성평등 이슈는 여성· 가족정책부서의 사무로 인식하여 여타 노동·일자 리·문화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에 개입하기 어려 웠다. 이에 조직의 성 주류화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 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평등 사전검토제'등 의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활동은 도지사 및 시장 등 단체장의 공약이나 성평등 의식에 영향을 주며, 특히 지방의회의 관심과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등을 개발・실시하여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지역 여성의 의사결정자로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5급 이상 외에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일·생활 균형, 성평등한 조직문화, 여성공무원의 리 더십 개발 등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의 직접참여는 다양한 여성이 지역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 진다. 지역마다 다양한 젠더거버넌스가 운영되면서 지역 여성들의 작은 소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참여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의 여성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정책의 성인지적 모니터링 및 환류, 성과등 일련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회 의원, 공무원, 젠더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여성들의 참여가 가능한성 주류화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복태·박성정·장윤선·하현상(2018),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NGO 현황분석 및 활성화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수범 외(2019), 「2019년 지방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성별영향평가지침」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장윤선·김경희·박수범·김수지·정혜선(2019), 「지방분권과 성평등정책기반 조성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행정안전부(2019),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여성가족부(2020.7.29.), '2019년 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조사결과' 보도자료. 여성신문, "광주, 전국 최초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2017.11.29.)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AJAX)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